

준법감시인(위험관리책임자)의 선임 내역

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”(이하 지배구조법) 제7조제2항 및 동법 제30조제2항, “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” 제3조제1항 등에 따라 회사의 준법감시인이자 위험관리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함을 공시합니다.

- 아 래 -

1. 임원선임

직위	성명	선임일	임기	담당업무	자격요건 적합여부
준법감시인 (겸 위험관리책임자)	정만기	2020.10.27	선임일로부터 3년	내부통제 위험관리총괄	적합

2020년 10월 6일 이사회를 통하여 상기 임원의 준법감시인(겸 위험관리책임자) 선임을 승인함